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954

발의연월일: 2020. 11. 4.

발 의 자:김성원·박대수·추경호

이주환 · 윤영석 · 하영제

권성동 • 한무경 • 서일준

임이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임명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.

따라서 국회운영위원회에 국회예산정책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간단한 이력사항만 제출하고, 대상자의 병역·납세 등 의무이행이나 법률 위반사항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대상자가기관의 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근거자료가 없는 실정임.

이에 국회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에 국회예산정책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병역·재산신고 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임명동 의 대상자의 공직 적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)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- 1. 직업·학력·경력에 관한 사항
- 2. 「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병역신고 사항
- 3.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산신고 사항
- 4. 최근 5년간의 소득세·재산세·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
- 5.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임명동의 요청 대상인 사람은 필요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장 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 라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u><신 설></u>	제5조의2(임명동의 시 첨부서류등)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처증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증병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1. 직업·학력·경력에 관한 사항 2. 「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병역신고 사항 3.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재산신고 사항 4. 최근 5년간의 소득세·재산
	4. 최근 5년간의 소득세·재산 세·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 납 실적에 관한 사항 5.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임명동의 요 청 대상인 사람은 필요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